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경두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원칙적으로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, 영상회의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24. ~ 6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방위사업청, 합동참모본부: 방위사업청장, 합동참모의장
 2. 육·해·공군: 육·해·공군 참모총장
 3. 해병대: 해병대 사령관
 4. 소속·직할부대 및 기관: 국방부 장관

제13조제1항 중 “소행·근무성적·공적(功績)·뉘우치는 정도, 징계요구”를 “비행 당시 계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, 징계의결등 요구”로 한다.

제14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(징계등 심의대상자, 대리인, 감사원, 증인, 피해자를 말한다. 이하

같다)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3(징계위원회의 시 소지품 제한 및 금지행위) ①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, 휴대전화, 기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

2. 흉기 등 위험한 물건

②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회의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

2.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

3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

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가 당초 심의·의결 당시 구성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재심사 청구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청구된 재심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성 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 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부득 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해 당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1. 방위사업청, 합동참모본부: 방위사업청장, 합동참모의장 2. 육·해·공군: 육·해·공군 참모총장 3. 해병대: 해병대 사령관 4. 소속·직할부대 및 기관: 국 방부 장관
제14조(징계위원회의 의결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4조(징계위원회의 의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

<신 설>

원회 회의는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(징계등 심의대상자, 대리인, 감사원, 증인, 피해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의3(징계위원회의 시 소지품 제한 및 금지행위) ①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

제25조(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) (생략) <u><신설></u>	<u>기류, 휴대전화, 기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</u> <u>2. 흉기 등 위험한 물건</u> <u>②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회의 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</u> <u>1. 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</u> <u>2.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</u> <u>3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 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 위</u> 제25조(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) <u>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</u> <u>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국방 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 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 외한 위원 과반수가 당초 심의 ·의결 당시 구성된 위원과 다 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818